

#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안전총괄과

- 제정 1997·12·29 조례 제 220호
- 개정 2001·3·7 조례 제 364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- 개정 2001·11·28 조례 제 392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- 개정 2008·7·25 규칙 제 37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
- 일부개정 2012·5·14 조례 제 933호
- 일부개정 2013·10·1 조례 제1001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3·11·14 조례 제1009호
- 일부개정 2015·12·31 조례 제1194호
- 일부개정 2018·3·28 조례 제1378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9·3·8 조례 제1468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- 일부개정 2019·5·8 조례 제1499호
- 일부개정 2022·9·30 조례 제1862호
- 일부개정 2023·3·6 조례 제1900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·5·14, 2015·12·31>

**제1조의2(협의회의 통합·운영)**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한다. <개정 2022·9·30>

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이천시 방위협의회
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이천시 민방위협의회

[본조신설 2015·12·31]

**제2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·9·30>

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

가. 통합방위 대비책

나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
다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
라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2.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사항

3.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사항

[전문개정 2015·12·31]

**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, 그 의장은 이천시장이 되며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·5·14, 2022·9·30>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2·5·14, 2013·11·14, 2015·12·31, 2022·9·30>

1. 이천시의회 의장
2.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
3. 701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4. 국가정보원 이천지역 관계관
5. 이천경찰서장
6.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
7. 이천소방서장
8. 이천시재향군인회장
9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2·5·14>

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<개정 2001·3·7, 2001·11·28, 2012·5·14,

2013·10·1, 2022·9·30)

1. 자치행정 및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
2. 심리전담당간사 :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
3. 작전담당간사 :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작전과장

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 2015·12·31>

1.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⑥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 <신설 2015·12·31>

**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**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서장이 된다. <개정 2012·5·14>

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,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,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08·7·25, 2012·5·14, 2013·10·1, 2018·3·28, 2019·3·8, 2023·3·6>

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·동원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 <개정 2012·5·14, 2015·12·31>

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⑤ 삭제 <2019·5·8>

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2·5·14, 2015·12·31>

**제4조의2(읍·면·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**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

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지원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장 소속하에 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, 본부장은 읍·면·동장이 된다.

② 읍·면·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·5·8]

**제4조의3(지원본부의 사무)**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·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
5.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이행

[본조신설 2015·12·31]

[중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·5·8]

**제5조** 삭제 <2015·12·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·3·7 조례 제36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2001·11·28 조례 제392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및 제3조** 생략

부칙 <2008·7·25 규칙 제37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**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⑨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⑯ 까지 생략

부칙 <2012·5·14 조례 제9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·10·1 조례 제1001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하며, 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지역개발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⑯ 까지 생략

부칙 <2013·11·14 조례 제10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12·31 조례 제11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3·8 조례 제1468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안전건설

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국장”을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9·5·8 조례 제149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②3 까지 생략

②4 「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②5 부터 ④0 까지 생략